

이런 점이 궁금합니다.



Q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?

A 장애인연금 신청하신 경우,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
1. 만 65세 이상인 경우
2. '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

Q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?

A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,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의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.

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?

A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.

Q 입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?

A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압류 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. 읍·면·동 주민 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

다름의 동행,
더 아름다운 세상을
만들어요



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

보건복지부-장애인연금제도 전담 안내

보건복지콜센터 : 국번 없이 **129** 민간인 119 **129** 합거름 멘

보건복지부 홈페이지 : www.mohw.go.kr

국민연금공단-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

(장애등급 판정 관련 민원상담)

국민연금콜센터 : 국번 없이 **1355**

읍·면·동 주민센터 - 신청 관련 문의

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- 대상자 결정 및

통지

